

★ ◎

본부장 방침 제441호

문서번호	건축공사1팀-5303
보존기간	1년
결재일자	2015.11.11
공개여부	공개
일상감사	대상아님

팀 원	건축공사1팀장	건설사업처장	건설사업본부장	
전재만	정성호	김영수	장달수	11/11
협조	파트장	배양수	견적발주팀장	김길상

**용산4구역 세입자 현장 근로자식당 운영 관련
진행(안)**

서울특별시 SH공사
(건설사업본부 건축공사1팀)

용산4구역 세입자 현장 근로자식당 운영 관련 진행(안)

용산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용산사고(2009.1.2.) 합의내용 중 미이행 사항인 '현장 내 임시식당 지원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에서 협조를 요청하여 현장 근로자 식당운영권에 대해 검토를 진행함

□ 관련근거

- 도시활성화과-7506호(15.07.13)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관련 협조 요청
- 견적발주팀-3898호(15.07.17)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관련 협조 요청 관련 회신
- 도시활성화과-10376호(15.09.24)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관련 검토 요청
- 건축공사1팀-4580호(15.10.01)용산4구역 세입자 요구안에 대한 검토 의견 통보
- 기술감사팀-1945호(15.10.13)발주시행(긴급)보고에 대한 일상감사 의견
- 건축공사1팀-4778호(15.10.13)항동 발주시행 보고의 일상감사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건축공사1팀-5070호(15.10.28)용산4구역 세입자 현장 근로자식당 운영권과 관련된 서울시 지침 통보 요청
- 도시활성화과-11650호(15.10.30)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관련 협조 요청

□ 추진현황

- 2015.07.13 : 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관련 협조 요청(서울시 도시활성화과)
- 2015.07.17 : 발주예정 현장 통보(항동2단지-646세대, 항동3단지,1,170세대)
(SH공사→서울시)
- 2015.08.17 : 법률자문 요청(1차) - 3개사(붙임 2참조)
 - 용산4구역 세입자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제공 시의 법적 문제점 발생 여부
 - 자문결과
 - ▽ 1개사 : 시공사의 협조를 얻어 직접 세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상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음
 - ▽ 2개사
 - ① 발주처가 해당 공사 건설현장 식당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시공사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적절함

②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015.09.24 : 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관련 검토요청(서울시→SH공사)
 - 제반시설 제공, 전기, 수도, 정화조 등 비용 건설사 부담, 미수금 문제 해결
- 2015.10.01 : 검토 의견 통보(SH공사→서울시)
 - 요구사항 제공불가 및 SH공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통보
- 2015.10.13 : 항동2,3단지 입찰공고문 내 안내문구 기재

항동2,3단지의 현장 근로자 식당은 SH공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운영권을 주어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장 설명회 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 2015.10.13 : 감사실 일상감사 의견 제시
 - 현장근로자 식당 운영권은 시공사의 고유권한으로 불공정 계약으로 민원제기 소지 있음.
 - 조치의견 : 현장근로자 식당 운영권을 SH공사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불공정 계약여부 / 관련근거 보완 / 민원 대응방안에 대한 보완 필요
- 2015.10.28 : 현장 근로자식당 운영권과 관련된 서울시 지침 통보 요청 (SH공사→서울시)
- 2015.10.28 : 법률자문 요청(2차) - 2개사(붙임 2참조)
 - 입찰공고 시 안내문구를 기재하였을 때의 법적 문제점이 없을 지의 여부, 불공정계약 등 법적 문제점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방안
 - 자문결과
 - ① 입찰공고문에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시공사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불공정거래행위 적용여지가 없음. 향후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것에 대비하여 입찰계약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근거를 확보가 필요함
 - ②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고 시 조건은 사전에 공지될 필요가 있고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그 취지를 설명하고 시공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법률적 문제를 제거함에 도움이 될 것임
- 2015.10.30 : 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관련 협조 요청(서울시→SH공사)
 - 현장 내 임시식당 지원에 관한 사항 이행을 위해 발주예정인 사업장에 임시 식당 부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 2015.11.12 : 현장 설명회 개최 예정

□ 검토의견

- 일상감사 조치의견에 따라 관련내용을 검토한 결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취지 설명 및 관련절차를 이행하면 관련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입찰공고 시 향동2,3단지를 대상단지로 공고하였으나, 향동3단지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3단지과 통합발주되었으므로 대상단지를 변경하여 안내

□ 추진계획

- 일상감사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불공정 계약여부 : 법률자문 결과로 같음
 - 관련근거 보완 : 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 협조요청(서울시, 15.10.30)
 - 민원대응 방안에 대한 보완 필요 : 현장설명회 시 관련내용 안내
- 현장 설명회 시 관련내용 안내(붙임 3참조)
- 최종 입찰계약대상자에 대한 확약서 징구(붙임 4참조)
- 입찰 후 시공사와 용산4구역 세입자간 관련업무가 조율되도록 회의 주관

□ 행정사항

- 일상감사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건축공사1팀
- 현장 설명회 시 관련문구 안내 : 견적발주팀
- 최종 계약당사자에 대한 확약서 징구 후 계약팀 및 시공부서 통보 : 견적발주팀

- 붙임 1. 용산4구역 세입자 민원관련 공문일체
2. 1,2차 법률자문 요청서 및 자문결과
3. 현장설명회 시 현장 근로자 식당 운영 관련 안내
4. 확약서
5. 관련 보도자료(교통방송, 2015.01.20). 끝.